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 등록변경 등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4일
신고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내용	상호		등록번호	
			등록일	
등록사항 변경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해산·폐업	해당사항 [] 해 산 [] 폐 업			
	해산·폐업일			
휴업	휴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업무재개	업무재개일			
사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대행업자의 등록사항 변경, 해산·폐업, 휴업 또는 업무 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 지정서(「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해산·폐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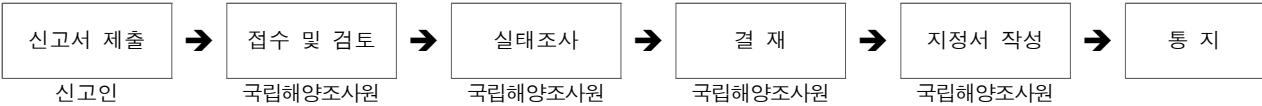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